관련 법령 조문

사내불륜, 직장 내 징계와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압박하는 법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1항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일부개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제350조(공갈) 제1항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민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183조(송달장소) 제1항·제2항

①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
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94호, 2025. 4. 1., 일부개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1항 제1호 발췌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2019. 11. 26., 2020. 12. 29., 2025. 4. 1.>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민사조정법

[시행 2020. 3. 5.] [법률 제16910호, 2020. 2. 4., 일부개정]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가사소송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59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3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